


7/8

## 기 안 용 지 공고제 151호

도시계획 번호	도시 415	(전라번호 366)	시정규격 11 조 3항 주상 전경사상
처리기관	도시계획추진	제2부시장	
일차	—		
보존년한			
보	도시계획과장	<span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중대</span> (공인결어) 시민과장 운영과장 종합계획과장 조 건물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	
조	지역계획계장		
기			
관			
기안책임자	신종섭	72. 6. 26	조
경수합	유신조	각안함근	발신
제목	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		
"제 1안. 내부결어			
1 관내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			정서
계획 용도지역 변경 (주거지역 → 주거지역)을 도시 45~4874			
호(71. 12. 17)로 건설부 장관에게 표시하였던바			관인
2 급반 도시 45~10467호(72. 6. 2)로 별첨 과사무			
사본 및 관계도면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			발송
12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별안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재			

0201-1-8A

1969. 11. 10. 승인

5-1 PP

190mm x 268mm 백상지 40g/m<sup>2</sup>



1. 지구 관내 성수동1가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설부  
 고시 제 258호(72.6.21)로 용도지역 일부변경 결정 고시  
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공고문  
 사본과 같이 공고하였던 지구 바리도면을 정리하고 제시판에 제  
 시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기 할 것이며 대지 증명 발급등 관계 업무  
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.

첨부 <sup>공고문</sup>공고문 사본 및 관계도면 각 1부 인.

"제4안"

수신 시민과장  
 제목 등 건

발신 도시계획과장

1. 당시관내 성동구 성수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건설  
 부 고시 제 258호(72.6.21)로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고시  
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공고문 사본  
 및 도면과 같이 공고하였던 도시계획 열람 사무 취급에 만전을  
 기하여 주사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 인.

"제5안"

수신 공보 실장  
 제목 등 건 (시보제채의회)

발신 도시계획과장

1. 건설부고시 제 258호(72.6.21)로 관내 성동구 성수  
 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 도시  
 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였던 시보에

5-4

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원부. 공고문 4본 1부 붙.

